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 전자기록등행사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위계공무집 행방해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사기· 부정처사후수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허위공문서 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·제3자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제3자뇌물취득



[울산지방법원 2017. 2. 17. 2016고합209, 287(병합), 367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3인

【검 사】강백신, 박철우(기소), 김준호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춘기 외 4인

【주문】

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3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2,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28,100,000원을, 피고인 3으로부터 1,032,700원을, 피고인 4로부터 241,604,240원을 각 추징한다. 피고인 2, 피고인 3,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2010. 7. 중순경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의 점, 피고인 4에 대한 2010. 7. 중순경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.

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